

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9. 12. 20
- 회부일자 : 1999. 12. 20

3. 제안이유

-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의회 의장과 퇴진을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,
-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권한위임 확대 (제3조)
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을
⇒ 조례(규칙)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에게 위임
(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 제2조)
- 별정직공무원 전보규정 보완 (제7조)
단위기관에서만 전보를

- ⇒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
- 근무상한연령의 예외규정 신설(제8조)
일반직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된 근무상한 연령을
 - ⇒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 의장의 비서관과 비서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신설

5.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
 - 소속기관장에게만 위임하던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권을 의회사무처장에게까지 확대 위임하고,
 -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의 별정직 비서관 및 비서의 정년(일반적인 5급이상은 60세, 6급이하 57세)을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의 임기와 같이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
 - 별정직 공무원의 단위 기관내에서 전보하도록 한 규정을 단위 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만 전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※ 붙임 :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(안)